

지급명령신청서

채 권 자 주식회사 동행로지스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13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서민재

채 무 자 주식회사 한결식품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14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김하린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3,70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9,2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1,600원)

청 구 원 인

1. 배차 합의와 운송비 약정

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. 5. 8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까지 냉장식품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금 3,700,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. 채무자는 납품 완료 후 2026. 5. 20.까지 위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
2. 상차·운송과 납품 완료

채권자는 2026. 5. 9. 약정 화물을 상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납품지까지 운송하였고, 수령 담당자는 같은 날 운송장과 납품 인수증에 서명하여 화물 수량과 외관을 확인하였습니다.

3. 지급기 도래와 미지급

채권자는 운송 완료 후 운송비 청구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.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 지급일인 2026. 5. 20.이 지난 뒤에도 운송비 금 3,700,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, 채권자가 2026. 5. 27.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

4. 결론

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운송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운송계약서 또는 배차서 사본 1통
2. 상차 확인서 및 운송장 1통
3. 납품 인수증 및 수령 확인자료 1통
4. 운송비 청구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통
5. 운송비 지급 요청 메시지 1통

2026. 8. 7.

채권자 주식회사 동행로지스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